

영화 『크루엘라(cruella)』로 알아보는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여 취업에 성공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여 취업에 성공했다면 어떨까요?



1. 영화 소개

도디 스미스의 소설과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101마리 달마시안>의 등장인물이었던 크루엘라 드 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로, 크루엘라는 디즈니의 치명적 매력의 빌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2. 영화 속 한 장면



재스퍼는 크루엘라를 백화점에 취직시키기 위해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합격으로 분류해 놓은 이력서 더미에 크루엘라의 이력서를 끼워넣습니다.



덕분에 크루엘라는 꿈에 그리던 백화점에 취직하게 되고, 이는 크루엘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강력한 발단이 됩니다.

만약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직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유사 사례 및 판례

유사한 사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업무의 중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수정하여 그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2차 선정위원회에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2차 선정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매각 중간사를 선정하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여기서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위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법 상 위계란 무엇을 뜻하는 말 일까요?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합니다.

6. 결론

따라서 위 두 사건 모두 형법 제314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이야기)